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제공 의무화 〉
■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420호)

2021.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제공 의무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익표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1. 9. 3.

다. 회부연월일 : 2021.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관련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및 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의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제공 의무화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다목 신설).

또한,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려는 원자력안전정보가 신설되는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일시 및 고장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823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법률 제1823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 1. -----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라.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
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및 같
은 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
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
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 이
경우 제공하려는 원자력안전정보
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
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일
시 및 고장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②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 -----.
---	--

다. 검토의견

○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92조¹⁾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 등이 발생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장해방어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명시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원자력이용시설 고장, 방사선장해 등의 내용이나 통보 방식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

-
-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 제 92조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입법취지로 봄.

- 특히, 원자력 시설의 사고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전조치 등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여짐.²⁾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2) 2020년 8월 대전 한전원자력연료제2공장 기화실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누출돼 현장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경우가 있었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 등에 관하여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와 관련하여 시행예
정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0조³⁾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
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 제10조제2항⁴⁾에서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
설의 사고·고장이 발생하면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 등을 홈페이
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수준보다 강화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
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
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
여야 한다.[시행 2022. 6. 9.]

4)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0조(대국민 정보공개) ① 위원
회는 방사선에 따른 재해 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보고받
은 사건의 개요 및 방사선 장해 가능성을 포함한 초기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기초·광역지방
자치단체 및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구두보고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및 관련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보 제공 수단을 갖
추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공개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4.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의 내용 중 작성이 가능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홈
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보 제공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원회
가 변경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는 취지로 보여짐.

이와 관련하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법 시행일('22. 6. 9)에 맞춰 다음과 같이 시행령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의 신속한 통보 등 공개 절차의 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 률	시 행 령 (안)
제 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u>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u> 하여야 한다.	제00조(원자력이용시설 장애방어조치 보고 관련 공개 절차)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u>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u> 및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u>원자력안전협의회</u> 에 보고받은 내용을 이용가능한 통신수단을 통해 <u>신속히 통보</u> 하여야 한다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 9.

참고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당

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32호, 2020.7.28.)과 병합 심사를 하여 유사한 내용을 논의하였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령을 마련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228

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4929호, 2020.1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642호, 2020.6.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32호, 2020.7.28.)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였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2432호, 2020.7.28.)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원자력관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즉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